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_WOR 개정대비표

### 1.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b>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b> (판매기업용 – 상환청구권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b></p> <p><b>제 1 조 거래조건</b></p> <p>① 한도거래여신의 경우에는 약정기한 이내에서 1회의 회전기간 및 개별여신의 여신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p> <p>② (기재생략) ③ (기재생략)</p> <p><b>제 2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b></p> <p>① 제1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p> <p>1.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일물 CD 유통수익률, AAA등급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AAA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단기코픽스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외화대출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 LIBOR 3개월물,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p> <p>2. 각각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는 아래의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p> <p>가. 91일물 CD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 나. 6개월물 금융채 또는 1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 다.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 라. LIBOR 1개월물 또는 LIBOR 3개월물 또는 LIBOR 6개월물은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고시하는 금리</p> <p>② 제1항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1조에서 정한 변동주기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초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p>	<p style="text-align: center;"><b>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b> (판매기업용 – 상환청구권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b></p> <p><b>제 1 조 거래조건</b></p> <p>(삭제)</p> <p>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손님에게 불리한 항 삭제 (금감원 권유)</p> <p>체상 체상</p> <p>업무절차에 따른 불필요 조항 삭제</p>

<p><b>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b></p> <p><b>제 3 조 지연배상금</b></p> <p>① 이자 ·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b>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b></p> <p>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9 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b>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b></p> <p>③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b>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b></p> <p><b>제 4 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b></p> <p>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b>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b></p> <p>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b>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b></p> <p><b>제 5 조 감액 · 정지</b> (기재생략)</p> <p><b>제 6 조 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에 대한 약정</b></p> <p>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 및 당좌예금(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p> <p>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p> <p>③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 1 조의 여신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자금은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p> <p>④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 일간 지체한 때 은행여신거래약관(기업용) 제 7 조 제 2 항에 따라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때부터 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p>	<p><b>제 2 조 지연배상금</b></p> <p>① 이자 ·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b>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b></p> <p>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9 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b>그 다음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b></p> <p>③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b>한도 초과된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b></p> <p>(삭제)</p> <p><b>제 3 조 감액 · 정지</b> (연행과 같음)</p> <p>(삭제)</p>	<p>조 체상 및 여신거래약정 서(기업용) 문 구 반영</p> <p>업무절차에 따 른 불필요 조 항 삭제</p> <p>조 체상</p> <p>업무절차에 따 른 불필요 조 항 삭제</p>
---	---	--

<p>곧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⑤ 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p> <p>⑥ 당좌대출의 경우, 제 5 조에 의한 감액·정지로 인하여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더라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p> <p>⑦ 은행은 어음·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여신기간 만료일전에 발행한 어음·수표를 여신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p>																																				
<p><b>제 7 조</b> 인지세의 부담 (기재생략)</p> <p><b>제 8 조</b> 담보권 설정</p> <p>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p> <p>② 제 1 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p> <p>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캐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p> <p>④ 은행은 제 1 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p>	<p><b>제 4 조</b> 인지세의 부담 (연행과 같음)</p> <p>(삭제)</p>	<p>조 체상</p> <p>업무절차에 따른 불필요 조항 삭제</p>																																		
<p>■ (근)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p> <table border="1" data-bbox="92 1117 983 1473"> <tr> <td rowspan="2"><b>종 별</b></td> <td><b>증서 기 · 번호</b></td> <td><b>명의인 또는 위탁자</b></td> <td><b>금 액</b> <small>(계약액)</small></td> <td><b>20 . . . 까지</b></td> <td><b>증서일 자</b></td> <td><b>지급기일</b></td> </tr> <tr> <td><b>계좌번호</b></td> <td><b>수익자</b></td> <td><b>입금누계액</b></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b>종 별</b>	<b>증서 기 · 번호</b>	<b>명의인 또는 위탁자</b>	<b>금 액</b> <small>(계약액)</small>	<b>20 . . . 까지</b>	<b>증서일 자</b>	<b>지급기일</b>	<b>계좌번호</b>	<b>수익자</b>	<b>입금누계액</b>																										
<b>종 별</b>		<b>증서 기 · 번호</b>	<b>명의인 또는 위탁자</b>	<b>금 액</b> <small>(계약액)</small>	<b>20 . . . 까지</b>	<b>증서일 자</b>	<b>지급기일</b>																													
	<b>계좌번호</b>	<b>수익자</b>	<b>입금누계액</b>																																	


**제 9 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기재생략)

**제 10 조** 자료의 제출 등  
(기재생략)

**제 11 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인)
--	----	-----

### 추 가 약 정 서 (판매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위한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  
여신거래약정(이하 "원 약정서"라 한다)에 추가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 1 조** (서류의 제출)

(기재생략)

**제 2 조** (입금계좌 지정)

대출금 또는 상기 채권만기시의 현금 입금계좌는 다음 계좌로 합니다.

계좌번호 : 예금주:

**제 5 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연행과 같음)

**제 6 조** 자료의 제출 등  
(연행과 같음)

**제 7 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인)
--	----	-----

### 추 가 약 정 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본인은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을 위한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한다)에 추가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제 1 조** (서류의 제출)

(연행과 같음)

**제 2 조** (입금계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대금 및 외상매출채권 만기결제 대금의 입금을 위한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CMS 계좌 제외) 중  
다음의 계좌로 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비 고
-----	-----	------	-----

조 체상

조 체상

조 체상

용어수정

준용 약관 추  
가 등 문구 수  
정

용어 수정

	<b>사업자등록번호</b>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b>제 3 조 (개별대출의 실행)</b>			
<p>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INTERNET(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담보 매출채권[귀행이 원 약정서 및 본 추가약정서에 따라 본인에게 취급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귀행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본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채무자인 (이하 "거래처"라 합니다)로부터 통보받은 구체적인 채권명세를 기초로 귀행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매출채권 내역을 뜻하며, 이하 "매출채권"이라 합니다]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받기로 하고, 귀행 또는 인터넷 등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취급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대출받기로 합니다. 단 본인이 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 매출채권은 대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그 지급기일이 180 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p>			업무절차에 따른 문구 수정
<b>제 4 조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b>			
<p>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u>변제기일</u>로 합니다.</p> <p>② 제 1 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u>지급기일</u>에 귀행이 동 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고, 거래처가 <u>지급기일</u>에 귀행에게 담보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p> <p>③ 거래처가 <u>지급기일</u>에 입금(또는 결제)한 매출채권결제금액이 협력기업들(본인 포함)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대출 취급분, 미취급분의 순서로 회수하여 만기도래 순, 접수일자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p>			용어수정
<b>제 3 조 (개별대출의 실행)</b>			
<p>① 은행이 원 약정서에 따라 본인에게 대출함으로써 본인이 부담하게 될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에 따라 본인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p> <p>②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 할 수 있기로 합니다.</p> <p>③ 외상매출채권 별 대출가능금액은 채권금액에서 채권별로 이미 대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합니다.</p> <p>④ 본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발행일(통보일)로부터 180 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p> <p>⑤ 대출가능기간은 외상매출채권별로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협력기업의 대출취급가능일부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p> <p>⑥ 건별대출의 신청은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p>			용어수정
<b>제 4 조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b>			
<p>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u>만기일</u>로 합니다.</p> <p>② 제 1 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u>만기일</u>에 귀행이 동 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고, 거래처가 <u>만기일</u>에 귀행에게 담보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p> <p>③ 거래처가 <u>만기일</u>에 입금(또는 결제)한 매출채권결제금액이 협력기업들(본인 포함)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대출 취급분, 미취급분의 순서로 회수하여 만기도래 순, 접수일자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p>			용어수정

<p><b>제 5 조 (대출의 제한)</b></p> <p>①~③ (기재생략)</p> <p>④ “원 약정서”상 제 1 조의 여신한도금액에도 불구하고, 귀행과 거래처간에 체결한 ‘거래처의 협력기업들(본인 포함)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총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p>	<p><b>제 5 조 (대출의 제한)</b></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원 약정서 제 1 조의 여신한도금액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다른 협력기업의 대출잔액의 합계금액이 은행과 구매기업간에 체결한 “협력기업에 대한 총대출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p>	용어 수정
<p><b>제 6 조 (지연이자 수취)</b></p> <p>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할인료 또는 대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①~② (기재생략)</p>	<p><b>제 6 조 (관련법상 지연이자에 대한 유의사항)</b></p> <p>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할인료 또는 대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①~② (현행과 같음)</p>	모호한 문구의 제목 및 용어 수정 (금감원 권유)
<p><b>제 7 조 (정보제공의 동의)</b></p> <p>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본인에 관한 기본정보 및 개별대출 실행내역 등의 거래내역을 “거래처”에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p>	<p><b>제 7 조 (정보제공의 동의)</b></p> <p>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구매기업에게 본인에 관한 약정정보 및 사업자정보, 대출내역 등을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p>	용어 수정
<p><b>제 8 조 (면책)</b></p> <p>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p> <p>② (기재생략)</p>	<p><b>제 8 조 (면책)</b></p> <p>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p> <p>② (현행과 같음)</p>	손님에게 불리한 문구 수정 (금감원 권유)
<p><b>제 9 조 (상환 의무)</b></p> <p>본인의 거래처와 귀행 간에 사전에 협의한 CMS, Real Time Banking 기타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 통보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채권명세,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본인이 인터넷 또는 창구에서 대출 신청시 전산오류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정당한 외상매출채권금액보다 대출금이 과도하게</p>	<p><b>제 9 조 (상환 의무)</b></p> <p>① 구매기업과 은행 간에 사전에 협의한 전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 통보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채권명세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본인이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창구에서 대출 신청시 전산오류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정당한 외상매출채권금액보다 대출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 차액은 본인이 즉시 갚기로 합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p>	항 번호 신설 및 문구 수정

<p><u>지급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u></p>	<p>제 7 조 3 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인이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워 · 가공거래, 유통등에 의해 발행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u>취급된 경우</u></li> <li>2. 대출취급 시 작성오류, 어워, 위 · 변조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대출이 <u>취급된 경우</u>. 다만 작성오류인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자료를 보완 제출하면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ol>	<p>업무절차에 따른 항 및 호 신설</p>
<p><b>제 10 조 (기한연장 및 약정의 자동 해지)</b></p> <p>① (기재생략)</p> <p>②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2년이상 <u>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말일자로 본 이용약정 및 여신약정은 별다른 통보없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u></p>	<p><b>제 10 조 (기한연장)</b></p> <p>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손님에게 불리한 조항 수정 및 삭제 (금감원 권유)</p>
<p><b>제 11 조 (본 추가약정의 효력)</b></p> <p>본 추가약정,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 약정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순서로 적용됩니다.</p>	<p><b>제 11 조 (본 추가약정의 효력)</b></p> <p>본 추가약정,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 약정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순서로 적용됩니다.</p>	<p>준용 약관 기재</p>
<p><b>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b> (포괄계약)</p> <p>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하 "판매기업"이라 합니다)은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이하 "구매기업"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등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p> <p><b>제 1 조 (계약의 목적)</b></p> <p>판매기업의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은행과 판매기업 양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b>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b> (포괄계약)</p> <p>(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하 "협력기업 (또는 판매기업)"이라 합니다)은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이하 "구매기업"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등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p> <p><b>제 1 조 (계약의 목적)</b></p> <p>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매출채권(팩토링)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과 협력기업(또는</p>	<p>용어 수정</p> <p>용어 수정</p>

		<p style="color: yellow;">판매기업) 양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 style="color: yellow;">제 2 조 (양도할 대상채권 및 피담보채무)</p> <p><u>판매기업은</u> 아래의 피담보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합니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체결한 아래의 기본계약에 따라 <u>판매기업이</u>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이하 "대상채권"이라 합니다) 전액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p>	용어 수정
피담보채무의 범위	은행과 <u>판매기업</u> 당사자 사이에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신거래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u>판매기업이</u>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		용어 수정
양도할 대상채권	물품 또는 용역 등과 관련하여 <u>판매기업과</u> 구매기업이 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_____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u>구매기업과 은행이</u>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u>판매기업이</u>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	<p style="color: yellow;">기본계약</p>	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구 수정
		<p style="color: yellow;">제 3 조 (대리권 수여 및 채권양도 등)</p> <p>① <u>화정채권 양도방식</u>인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u>판매기업이</u>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확정되는 경우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명세를 통보받은 은행은 <u>판매기업을</u> 대리하여 은행과 채권양도계약(자기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구매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li><li>2. <u>판매기업은</u> 제 1 호의 대리권 수여 및 자기계약체결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은행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 하지 않기로 합니다.</li><li>3. (기재생략)</li></ol> <p>② <u>포괄 승낙방식</u>인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판매기업은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 앞 포괄채권양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은행에게 수여합니다.</li></ol>	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구 수정

	<p><b>2.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은 이 계약에 의해 채권양도된 것으로 봅니다.</b></p>	문구 수정
	<p><b>3.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양도 통지서(포괄 승낙방식용) 원본을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b></p>	
<p><b>제 4 조 (판매기업의 진술 및 보증)</b></p> <p>① <b>판매기업은</b>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상채권이 제 3 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가능하고, 구매기업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b>판매기업</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은행이 <b>판매기업으로부터</b>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p> <p>②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b>판매기업</b>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은행의 요청에 따라 <b>판매기업</b>은 그 즉시 은행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p>	<p><b>2.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은 이 계약에 의해 채권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은행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에게 확정 외상매출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제 1 호에 추가하여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서(확정채권 양도통지용) 원본을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방법에 의합니다.</b></p> <p><b>3.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 앞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은행에게 수여합니다.</b></p>	용어 수정 용어 수정
<p><b>제 5 조 (변제충당 및 정산)</b></p> <p>은행이 <b>판매기업</b>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함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우선적으로 은행의 <b>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b> 제 13 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b>판매기업</b>의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금원이 있으면 <b>판매기업</b>이 지정하는 <b>판매기업</b>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 단 <b>판매기업</b>의 다른 채권자가 대상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경우 그 압류된 금액 범위내에서 본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압류 등 효력이 선후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금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도 합니다.</p>	<p><b>제 4 조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진술 및 보증)</b></p> <p>① <b>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b>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상채권이 제 3 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가능하고, 구매기업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b>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은행이 <b>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으로부터</b>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p> <p>②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b>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b>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은행의 요청에 따라 <b>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b>은 그 즉시 은행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p>	용어 수정 용어 수정
<p><b>제 6 조 (담보가치의 유지)~제 7 조 (특약사항)</b></p> <p>(기재생략)</p>	<p><b>제 5 조 (변제충당 및 정산).</b></p> <p>은행이 <b>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b>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함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우선적으로 은행의 <b>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b> 제 13 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b>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b>의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금원이 있으면 <b>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b>이 지정하는 <b>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b>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 단 <b>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b>의 다른 채권자가 대상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경우 그 압류된 금액 범위내에서 본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압류 등 효력이 선후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금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도 합니다.</p> <p><b>제 6 조 (담보가치의 유지)~제 7 조 (특약사항)</b></p> <p>(현행과 같음)</p>	용어 수정

<p>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u>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u>,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포괄계약)]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p>	<p>본인 (인)</p>	<p>본인 (인)</p>	용어 수정
<p>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u>추가약정서</u>,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 (포괄계약)]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p>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p>채권양수인 (은행)</p> <p>주식회사 <b>하나은행</b> _____ (인) 주 소 : _____</p>	<p>본인(채무자겸 채권양도인)</p> <p>주 소 : _____</p>	<p>채권양수인 (은행)</p> <p>주식회사 <b>하나은행</b> _____ (인) 주 소 : _____</p>	<p>본인(채무자겸 채권양도인)</p> <p>주 소 : _____</p>
구매기업 (중심기업) 정보		구매기업 (중심기업) 정보	
<p>업 체 코 드: _____</p> <p>중 심 기 업 명: _____</p> <p>중심기업 사업자번호: _____</p>		<p>업 체 코 드: _____</p> <p>중 심 기 업 명: _____</p> <p>중심기업 사업자번호: _____</p>	

2. 개정 시행일 : 2019년 5월 30일

3.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적용